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공인노무사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

들어가며

사업장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한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이 같은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그 위험성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과정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고시에서 그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최근 위험성평가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정부도 이에 대한 홍보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위험성평가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고용노동부고시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와 시기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사업주다. 다만, 이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 위험성 감소 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시점에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위험성평가」 및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시 및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위험성평가의 대상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은 업무 중에 노동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이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밖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절차와 방법

위험성평가는 「사전 준비」→「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 결정」→「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의 순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는 사전 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해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Checklist)법」,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방법」중 1개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결론을 대신해

사업주와 노동자는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마련한 대책은 수용도와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스스로 마련한다면, 산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형식적인 위험성평가가 아닌 실질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면, 위험성평가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